

뉴질랜드 MRL 개요

□ 뉴질랜드 잔류농약 규제법규 발효

주요내용

- (경위) 1981년 Food Act 11C, 11L의 “지속적으로 식품 기준을 수정 발표 할 수 있다” 라는 규정에 따라
‘14년 6월 23일 수정 발표된 뉴질랜드 잔류농약 규제법규가 동해 7월 31일부터 적용됨
* (시행기관)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소속 식품안전청
- (주요내용) 등록 고지된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 초과 시 판매금지
* 잔류농약 규제법규 상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0.1mg/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

※ 왜 MRL(Maximum Residue Limits)이 계속해서 재검토/수정 되어야 하는가?

- 식품 혼합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
- 뉴질랜드에는 혼합물 또는 가축용 의약품이 새로운 분야임
- 이상적 농업 재배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변화

○ 내용 : 약 260개 농약(살충제)성분의 식품 및 가축용 의약품 허용 기준치

○ 식품 수입 시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함

- the New Zealand MRL Standards(뉴질랜드 잔류농약 기준)
- Codex MRLs(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회원국이 만든 잔류농약 기준)

※호주로부터 수입 시 위 법규 외에 Standard 1.4.2 of the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(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 코드)를 따라야 함

○ 기타 : 기존 규제대상 외 금번 잔류농약 미설정 농약에 대해서는 검출시 0.1mg/kg을 초과할 경우 판매 불가